

펀뱅킹서비스 계약서(외화)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은행”이라 함)과 _____ (이하 “이용기관”이라 함)은(는) 다음과 같이 외화펀뱅킹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 1 장 기본사항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은행”이 “이용기관”에게 외화펀뱅킹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제공서비스의 종류, 대상계좌의 지정)

① “은행”은 “이용기관”에게 아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은행”에 개설된 “이용기관”의 외화계좌간 또는 “이용기관”의 고객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급금의 실시간 또는 대량이체 업무
2.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외화정기예금의 신규 개설 및 해지 업무
3.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외화 국내이체 / 국외송금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전송업무
4. “이용기관”이 지정한 예금계좌의 거래명세를 일괄 또는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업무와 잔액조회 및 환율정보 조회 업무
5. “이용기관”이 지정한 예금계좌의 거래명세 또는 마감잔액을 해외 지정은행 앞 전송하는 업무
6.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계좌의 성명 조회 업무
7. “이용기관”이 “은행”과 거래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합니다)로부터 수납 받거나 상환 받아야 할 각종 대금 등의 자동계좌이체 업무
8. “이용기관”과 “은행”이 상호 별도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서에 기록 체결한 업무

② “이용기관”은 “은행”이 외화펀뱅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이 사용할 서비스 종류 및 외화자금의 인출을 위한 예금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는 본 계약과 별도로 “은행”이 제공하는 “외화펀뱅킹서비스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합니다.)에 따라 지정합니다.

③ “이용기관”은 “신청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은행”에게 “신청서”로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이 전산등록을 마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3조 (수수료 등)

“은행”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이용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 및 그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수료는 “은행”이 실제로 처리한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월 중 발생한 수수료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일괄 계산하여 별도 청구없이 익월 1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은행”이 “이용기관”의 “수수료 인출 계좌”에서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체 출금하기로 합니다.
3. 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효력 상실하는 경우에는 효력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수수료는 본 계약 효력상실일에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용기관”의 “수수료인출계좌”에서 출금하고 부족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청구합니다.
4. 서비스 수수료가 연체된 경우 서비스가 정지되며,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은행”은 “이용기관”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은행”은 시행일 1개월전까지 “이용기관”에게 서면 통보하며, “이용기관”은 이의가 있을 경우 시행일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은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합니다..
6. “신청서”의 수수료는 외화펀뱅킹 서비스 이용 수수료이며, 이와는 별도로 은행외환업무관련수수료는 “은행”이 해당 업무의 약관 등에서 정하는 외환관련 수수료에 따릅니다.(예 외화송금수수료, KEB이체수수료, 환가료, 대체료, 전신료 등)

제 2 장 외화계좌간 지급이체

제 4조 (업무의 처리)

- ① “이용기관”이 “출금계좌”에서 인출한 외화자금으로 외화계좌이체를 의뢰하는 시간은 “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이체의뢰 명세를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은행”에게 전송합니다.
- ② 제 ①항에 의하여 수신한 이체의뢰 명세가 쌍방이 정한 데이터의 송·수신 절차에 부합되게 수신 되었을 경우 “은행”은 이를 “이용기관”의 정당하고 유효한 이체의뢰로 간주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없이 “이용기관”이 지정하는 외화계좌로 이체하고 그 결과를 처리 즉시 “이용기관”에게 전송합니다.
- ③ “은행”은 “이용기관”로부터 통장, 증서, 예금청구서 등의 제시에 의한 별도의 예금청구 절차 없이 이체 의뢰금액을 “출금계좌”로부터 인출하기로 합니다.
- ④ 이체대상 계좌의 종류는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해 허용된 계좌에 한 합니다.



제 5조 (변경, 수정, 취소)

“이용기관”은 “은행”이 제 4조의 절차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한 이후에는 이체의뢰명세를 변경,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외화정기예금의 신규 및 해지

제 6조 (업무의 처리)

- ① “이용기관”이 “출금계좌”에서 인출한 외화자금으로 외화정기예금의 신규개설을 의뢰할 때에는 “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신규개설 의뢰명세를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은행”에게 전송합니다.
- ② 제 ①항에 의하여 수신한 신규개설 의뢰명세가 쌍방이 따로 정한 데이터의 송·수신 절차에 부합되게 수신되었을 경우 “은행”은 이를 “이용기관”의 정당하고 유효한 외화정기예금의 신규개설 의뢰로 간주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없이 외화정기예금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그 처리결과를 즉시 “이용기관”에게 전송합니다.
- ③ “은행”은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장, 중서, 예금청구서 등의 제시에 의한 별도의 예금청구 절차 없이 신규개설 의뢰 금액을 “출금계좌”로부터 인출하기로 합니다.
- ④ “은행”은 제 ②항에 의해 신규 개설된 외화정기예금을 만기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장, 중서, 해지 신청서 등의 제시에 의한 별도의 예금해지 신청절차 없이 해지하여 원금과 이자를 “이용기관”의 출금계좌에 입금하고 처리결과를 즉시 “이용기관”에게 전송합니다.
- ⑤ 제 ①항의 외화정기예금 신규개설 의뢰시간은 “은행”의 영업시간내로 합니다.

제 7조 (변경, 수정, 취소)

“이용기관”은 “은행”이 제 6조의 절차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한 이후에는 신규개설 의뢰명세를 변경,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외화송금 서비스

제 8조 (업무의 처리)

- ① 외화송금(국내이체 포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외화송금 신청명세 및 처리결과에의 전송은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합니다.
- ② “은행”은 “이용기관”으로부터 통장, 중서, 예금청구서 등의 제시에 의한 별도의 예금청구 절차 없이 “이용기관”의 송금신청의뢰에 따라 송금의뢰금액을 “출금계좌”로부터 인출하여 송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과 “이용기관”이 송금의뢰대전지급결제방법에 대한 별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이용기관”은 본 서비스 이 외에 “은행”의 영업점 창구를 통한 직접결제 또는 “은행”(“은행”의 영업점 포함) 명의로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결제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기관”이 외화송금을 신청하고자 “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외화송금 신청명세를 상호 연결된 통신망을 통해 “은행”에게 전송한 경우 그 전송내용은 “이용기관”의 정당하고 유효한 외화송금신청으로 간주되며, “은행”은 “이용기관”의 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송금대금을 인출하여 “이용기관”이 지정한 은행으로 송금하고 처리결과를 송금일 익영업일까지 “이용기관”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기관”은 “은행”이 제 ③항의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이후로는 외화송금의 취소 또는 대금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제 9조 (변경, 수정, 취소)

“이용기관”은 “은행”이 제 8조의 절차에 의거 정당하게 처리한 이후에는 이체의뢰명세를 변경,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외화금융정보전송 서비스

제 10조 (업무의 처리)

- ① 입출금 거래명세 전송서비스
“이용기관”이 지정한 계좌의 거래명세를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이용하여 “은행”이 “이용기관”에게 실시간 전송합니다.
- ② 외화예금 잔액조회 서비스
“은행”은 본 계약에 의해 지정된 “출금계좌”의 외화예금 잔액을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 ③ 고시외환환율정보 조회 서비스
“은행”은 “이용기관”의 요청으로 외국통화에 대한 1회차 또는 추가 고시된 환율을 “이용기관”에게 전송합니다.
- ④ 외화송금 도착통지 서비스
“은행”은 “이용기관”의 계좌로 외화송금이 도착할 경우 동 내역을 “이용기관”에게 전송합니다.
- ⑤ 수취계좌성명조회 서비스
“은행”은 “이용기관”이 특정계좌에 대한 당행거래계좌 여부 및 성명 조회에 대한 확인 요청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송합니다.



제 11조 (전송시간)

“이용기관”이 전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은행”의 영업시간 내로 하며 “은행”의 전산 사정상 전송시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실시간 수납이체

제 12조 (실시간수납이체 업무의 범위)

“은행”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납입 받거나 상환 받아야 할 각종 수납대금을 “은행”에 개설된 “납부자” 계좌에서 즉시 인출하여 “이용기관”의 “모계좌”에 즉시 입금하는 자동계좌이체 업무로 합니다.

제 13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의 접수 등)

자동계좌이체 신청서의 접수, 신청내용의 전산등록 및 자동계좌이체 신청명세 전송 등의 업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은행”은 “이용기관”이 “이용기관”의 고객(이하 “납부자”)으로부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을 자동계좌이체 신청 직접접수이용기관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기관”은 “납부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반드시 자동계좌이체 약관 동의가 포함된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를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포함)으로 징구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이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직접 접수 가능한 경우에는 녹취 등(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출금 동의 방법)의 방법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단 자동계좌이체 신청자와 예금주의 명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용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자동계좌이체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전산등록하고 이를 보관하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의 원본 및 제 거래내역은 “납부자”가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해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은행” 또는 “납부자”가 자동계좌이체 동의에 관한 내용확인요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합니다..
4. “은행”은 “이용기관”로부터 접수한 자동계좌이체 신청내역에 대한 동의여부를 “납부자”에게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은 필요시 신청서 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점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5. “이용기관”이 직접 “납부자”로부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가.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접수받는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는 사전에 “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나. “납부자” 또는 제 3자가 “납부자”를 위하여 본인의 계좌를 출금계좌로 신청할 때 개인의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과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과 신청인의 실명확인 증표 사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징구)을 첨부한 신청서를 받아 처리합니다.
 - 다. “납부자”가 자동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출금계좌 등을 변경할 때에는 신규 자동계좌이체 신청으로 간주하여, 나 목에 준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라. “이용기관”은 “계좌이동서비스”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직접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기관코드, 납부자번호, 계좌번호가 기록된 자동계좌이체 신청서에 한하여 접수처리 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납부자명세전송 건당 수수료를 “신청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은행” 또는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신규, 해지, 변경 포함)를 접수처리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 가. “은행” 또는 “이용기관”은 “납부자”의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를 접수처리 한 후 “은행”의 익영업일 영업시간까지’ 사전 약속된 출금 계좌번호, 납부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등의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전송하기로 합니다. 단, 실시간 수납이체 이용기관은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나. “은행”과 “이용기관”은 가 목에 따라 전송 받은 데이터를 즉시 전산등록하고 처리결과를 당일 정해진 시각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 다. “은행”은 “이용기관”으로부터 전송 받은 자동계좌이체 신청명세 중 정상처리명세 및 전산등록 불능명세(계좌번호 오류 등)를 정해진 시각까지 “이용기관”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자동계좌이체 신청등록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라. “은행”과 “이용기관”은 데이터의 전송 및 전송결과를 수신하는 쪽에서 확인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 마. “은행” 또는 “이용기관”이 처리한 “납부자”로부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 접수처리 업무 및 자동계좌이체 처리 불능민원에 대하여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은 “이용기관”의 대고객 민원업무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합니다.

제 14조 (자동계좌이체 의뢰)

- ① “이용기관”은 별도로 정한 전산처리절차에 따라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자동계좌이체 의뢰명세를 정해진 시각까지 “은행”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수신 완료된 자동계좌이체 의뢰명세서를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기관”의 정당하고 유효한 자동계좌이체 의뢰로 간주하며, 동 명세서는 “은행”의 동의 없이 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 15조 (자동계좌이체 처리)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전송 받은 자동계좌이체의 처리는 다음 절차에 의합니다.

1. “은행”은 “이용기관”로부터 전송 받은 자동계좌이체 의뢰명세에 의거 “이용기관”의 이체지정일(실시간 수납이체의 경우 이체 의뢰 즉시)에 출금대상계좌의 지급가능잔액 범위내에서 인출하여 “이용기관”의 모계좌에 이체하고, 별도로 그 처리결과와 자동계좌이체 미등록, 잔액부족 등의 처리불능명세를 전송하기로 합니다.
2.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전송 받은 자동계좌이체 의뢰명세가 자동계좌이체 미등록,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도 “신청서”에 따라 실시간수납이체 의뢰건당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합니다.
3. “은행”이 “이용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업무를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출금일자, 출금회수, 출금금액 등 자동계좌이체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객과의 모든 분쟁은 “이용기관”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16조 (자동계좌이체 변경, 해지)

- ① “은행”이 자동계좌이체 등록원장 정리 목적으로 자동계좌이체 등록 자료를 “이용기관”에게 전송하여 자동계좌이체 계속 여부를 확인 요청할 경우 “이용기관”은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② “납부자” 또는 제3자가 “이용기관”에게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하고 “은행”에게 해지 요청한 경우에는 “은행”은 자동계좌이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지 신청 처리하고 해지한 사실을 “이용기관”에게 전송 또는 유선 통지하기로 하며, “이용기관”은 납부자명세전송 건당 수수료를 “신청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은 제 ②항에 따라 해지 등록한 계좌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자동계좌이체 청구를 하더라도 인출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④ “은행” 또는 “이용기관”은 최종인출요청일로부터 1년간 출금 요청이 없는 자동계좌이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이용기관”은 “은행”에 자동계좌이체의 해지를 요청하고, “은행”은 해당 건을 해지합니다.
 2. “은행”은 “이용기관”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자동계좌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단, 금융결제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이용기관에 대한 신청등록 내역은 해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모계좌의 인출)

“이용기관”은 “모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입금일 익영업일 이후에 인출하기로 합니다.

제 18조 (착오 인출 처리)

- ①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착오(타인계좌 또는 전산오류 등)로 계좌에서 인출되어 이체 처리된 경우에는 “은행”은 착오 인출 내용을 “이용기관”에게 유선 통지하며 “이용기관”은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착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착오 입금된 금액 상당액을 당일 중으로 출금 계좌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착오로 입금된 사실이 확실하고 “이용기관”의 처리가 지연되어 고객과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임의로 “모계좌”에서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체 금액을 즉시 인출하여 처리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용기관”에게 유선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직접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받은 계좌에서 착오 인출 사고가 연 3회(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은행”은 “이용기관”의 자동계좌이체 신청 접수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④ “이용기관”은 “은행”이 제 ③항의 착오 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 13조에 의거 “이용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9조 (고지의무)

- ① “이용기관”은 “납부자”에게 최초 출금개시일자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자동계좌이체 청구서 및 영수증(또는 확인증)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출금 동의 방법” 중 서면 외의 방법으로 자동계좌이체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자동계좌이체 청구서 및 영수증(또는 확인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기관”은 납기일 또는 납부자번호 등 납부자관련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기관”은 “납부자”가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 내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은 “이용기관”이 “납부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고지하도록 “이용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 7 장 공통 사항

제 20조 (업무처리의 순서)

같은 날에 외화계좌 이체 및 외화정기예금 신규개설, 외화송금 등의 신청건이 여러 건이 있을 때의 업무처리 순서는 “은행”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1조 (업무처리의 예외)

“은행”은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은행”의 관련내규 및 거래 약관에 따르기로 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1. “출금계좌”의 인출 가능 금액이 신청한 이체 및 송금 금액보다 적을 때
2. 대상계좌가 없거나 해지 혹은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때
3. 출금계좌 및 수수료 인출계좌나 대상계좌에 대한 법적절차 진행 및 기타의 사유로 그 계좌의 거래가 제한되어 있을 때
4.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으로 기준일자 예금잔액에 변경을 가져올 수 없을 때

제 22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은행”과 “이용기관”은 이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내용을 상호연결 된 전산망에 의거 출력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별도 요청이 있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이용기관”은 처리결과를 당일 중 확인하여야 하며, 당일 중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이용기관”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은행”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합니다. (단, 외화송금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기관”은 송금내역을 송금신청일 익영업일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송금신청 익영업일까지 “이용기관”이 “은행”에 별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이용기관”은 “은행”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합니다).

제 23조 (전산운용)

- ① 본 계약의 업무와 관련한 DATA의 송수신절차, 방법, 시간 등의 전산운용 세부사항은 “은행”과 “이용기관”의 전산실무담당 부서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② “은행”과 “이용기관”은 상호간에 송.수신되는 전산자료의 진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복기부호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 ③ “이용기관”은 PASSWORD 및 AUTHORIZATION CODE, 이체에 사용되는 복기부호 등 본 업무수행을 위한 안전장치를 “이용기관”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24조 (기밀유지)

“은행”과 “이용기관”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이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 25조 (면책)

본 계약내용 등 쌍방이 합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은행”과 “이용기관”은 그 책임을 면합니다.

제 26조 (협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27조 (준용사항)

- ①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각의 대상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은행”의 관련내규 및 수신거래기본약관, 외환 거래기본약관, 대상계좌의 거래약관이 적용됩니다.
-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이 적용됩니다.

제 28조 (계약기간)

이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만료일은 계약 당해년도 12월 31일로 정합니다.

제 29조 (변경)

“은행”과 “이용기관”은 쌍방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30조 (종료 및 연장)

- ①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요청일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만료 도래사실을 “이용기관”에게 통지합니다.
- ③ 제 ②항의 통지에는 “이용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이 1년간 연장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니다.
- ④ “이용기관”이 제 ②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됩니다.



본 계약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illegible]

20 년 1월 1일

(법인인감)